

#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 55 호)

- 2018. 12. 04.
- 재정건설위원회  
위 원 장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 2018.11.21.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11.23.
- 다. 상 정 일 자 : 2018.12.04.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1회 1일)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 서초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서초구 공영주차장」 중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공영주차장 26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하여 서초구민 및 방문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서초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최충열)

## ■ 본 동의안은

「서초구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함) 중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있는 주차장 26개소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1)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장법」 제8조제1항과 제2항2) 및 같은 법 제13조제2항과 제3항3)에서

---

**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3.05.02.)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1.11.1.)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05.0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1. 인적·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성과평가 자료 등

**2)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3)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주차장은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아 관리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차장은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sup>4)</sup>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sup>5)</sup> 기준에 부합함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대상 주차장 총 26개소에 주차면수 2,504면(공영주차장 현황표 참조)으로 각 급지별 해당 가액이 적용되며,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2항에 따라 1년으로 하였고, 예정가격 합계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48억원(위탁금 예정가액 현황표 참조)이며,

**4)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초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3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다만, 시설투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서초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서초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5)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수탁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6)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7)에 따라 위탁기간별 자료 제출은 별첨 「서초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관련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사건·사고 현황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임
- 2018년 11월 현재, 서초구 관내에는 31개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공개경쟁입찰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본 동의안의 주차장 또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법 규정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사료됨

---

6)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 8. 5.>

7)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삭제 2013.05.02.) ③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서초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1.11.1.) ④ 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한 대상사무는 그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3.05.02.)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다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그간의 운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9.> 1. 인적·물적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사고 현황 6. 성과평가 자료 등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 ① 수탁자를 살펴보면 개인에게 50프로이상 배정되고 있는데, 개인 수탁자가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답 : 이들 개인사업자는 관리운영 및 주위 민원에 대한 해결능력이 있고, 운영노하우에 따른 운영비 산출 및 입찰 최고가를 잘 알기에 낙찰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앞으로 무인자동화시스템이 진행됨에 따라 시설비 등이 높아지면 개인은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음

- ② 최고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위탁하기 보다는 수탁업체의 운영현황 등을 참고하여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업체는 감점을 주어 입찰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어떤지?

답 : 위탁계약은 1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에 따라 1년씩 2회 연장가능한데, 운영상의 지적사항은 다음 계약 시 참고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 ③ 공영주차장 26개소를 일괄 입찰하여 1개의 수탁업체가 통합 관리하도록 한다면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성, 규모의 경제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답 : 고려하겠습니다

질) 민간위탁의 취지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서초구민에게 주차편익 제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이므로 구민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과 야간시간대는 거주자 우선 주차로 개방하는 방안은?

답 : 현재 시민의 숲 동측주차장만 주차요금 50%를 할인하고 있는데, 구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야간시간대 개방도 검토하겠음

**5. 토론자 및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사구정리내용 : 없음**